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11. 18.  
도시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1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11월 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 11. 15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남승운)

#### 가. 제안이유

-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 나. 주요골자

##### ① 기금조성(안 제2조)

-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최저적립액은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
- 기금의 운용수입(법 제64조)
- 기타 잡수익

##### ②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법 제63조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위탁관리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

##### ③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사용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등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내용

##### ④ 회계공무원(안 제6조)

-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 기금출납공무원 : 하수계장

##### ⑤ 결산 및 보고(안 제7조)

- 기금 운용관은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
-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 재한)

'95. 12. 6 법률 제4993호 “풍수해법”이 “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불의의 재해대책을 위한 기금마련조성“을 위한 법근거를” 만든 것이며, 법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에 의거 수입과 운영의 관리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 사용후의 결산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임.

### 4.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86
----------	----

제출년월일 : 1996. 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이유

-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 2. 주요골자

### ① 기금조성(안 제2조)

-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최저적립액은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
- 기금의 운용수입(법 제64조)
- 기타 잡수익

### ②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법 제63조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 ③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사용
  -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등
  -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내용

### ④ 회계공무원(안 제6조)

-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 기금출납공무원 : 하수계장

### ⑤ 결산 및 보고(안 제7조)

- 기금 운용관은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
-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

###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법률 제4,993호 1995. 12. 6)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법률 제4,993호 1995. 12. 6)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대통령령 제15,033호 1996. 6. 21)
-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제정 표준(안) 통보 : 치수 13930-887('96. 7. 22)
- 재해대책기금조례제정 표준(안) 변경통보 : 치수 13930-1097('96. 9. 10)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제73조, 제104조(규칙 제176호, 1994. 6. 1)

나. 예산조치 : 년차별 기금 조성

다. 참고사항 : 없음

라. 조 례 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하수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